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10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형태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와 C토지구획정리조합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22. 7. 불상일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 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조합은 순천시 D 일대 294,324m²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2007. 4.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 중 잔여부분을 수급하여 진행하되, 공사비용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사업 수행 결과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30. 소외 조합에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가 기재된 준공계를 제출하였고, 순천시장은 2021. 5. 17. 소외 조합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2020. 4. 2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10870호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약 7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1가합11993호 반소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은 해지 내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선지출한 사업비 중 원고가 소외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316,639,246원의 지급을 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소외 조합은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 2021. 8. 27.자로 '소외 조합은 A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70호, 원고 소외 조합,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사건의 공사대금 중 1,173,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1. 9. 14. 소외 조합으로부터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이 사건 선행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마. 이 사건 선행소송 1심 법원은 소외 조합 및 승계참가인 피고의 사업비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횡령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82,055,7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소외 조합은 2022. 7. 26.자로 '소외 조합은 A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870호 약정금 등 사건의 일체의 판결원리금을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29,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도중, 소외 조합은 피고와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양도통지서가 2021. 8. 31.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21. 9. 14. 소외 조합으로부터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이 사건 선행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2021. 8. 31.이나 늦어도 원고가 소송승계참가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2021. 9. 13.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조합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제소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4. 13.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8. 27.자 양도통지서에는 '공사대금 중 1,173,5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 7. 26.자 양도통지서에는 판결원리금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소송의 사건명이 약정금이고,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해 청구할 채권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사업비채권인 점, 위 소송에서 사업비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불법행위채권이 인정되자, 소외 조합이 다시 2022. 7. 26.자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8. 27.자 양도통지서의 대상채권은 소외 조합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또는 사업비채권으로 2022. 7. 26.자 양도통지서의 대상채권인 판결원리금 채권과는 다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두 양도통지서의 대상채권이 동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646,545,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5.부터 2024.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 위 판결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소외 조합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38호증의 1 내지 9,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조합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양도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979,055,709원인데, 소극재산은 순천시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채무 1,498,821,273원, 가압장 운영관리비 체납액 416,955,000원 등 합계 7,659,344,818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조합이 2022. 7. 26.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 피고와 소외 조합의 관계, 소외 조합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소외 조합의 사해의사는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순천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변제한 후 소외 조합에 구상금 1,385,471,447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외 조합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약정금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제3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1호증, 을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소외 조합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외 조합이 순천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대위변제한 후 이를 구상하는 것인바, 소외 조합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중 2021. 8. 27.경 사업비채권을 양도받은 후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소외 조합의 채권채무 등 재산상태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때에는 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직 위 채권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은 채권의 양수인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태우

판사박아름

판사한지혜

별지

1) 원고는 통지의 상대방을 채무자인 소외 조합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제3채무자인 원고의 오기임이 명백하다.